〔일련번호 : 77〕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아동 대상 교육용역 성범죄 경력 조회 지연 및 미실시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아동을 대상으로 숲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강사 채용 시에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을 조회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 제공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숲 해설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에 대한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 완수 시점에 이르러서야 지연하여 조회한 사실이 있다.

[표] 성범죄 경력 조회 부적정 내역

연번	건 명	용역기간	부적정 사항
1	2024년 ○○○ 운영 용역	‘24.3.18.~ ’24.11.30.	성범죄 경력조회 지연 (‘24.10.8.)
2	2024년 ○○○ 용역	‘24.4.22.~ ’24.11.30.	성범죄 경력조회 지연(‘24.10.7.) 및 미실시(10명)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아동 대상 숲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 범죄전력 조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7〕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계약에 대한 완수검사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용역 및 물품 구매에 관한 계약 및 예산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검사를 할 때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제18조(대가의 지급)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 의무) 제1항제6호에 따르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세율은 같은 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제6호라목에 의거 기타소득의 100분의 20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의2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필요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숲해설 프로그램 등 용역을 추진하면서, 산출조사서 세부항목에 대한 별도의 지출 증빙자료 없이 용역비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업체가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미이행하였음에도 이를 검사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고 완수검사(감독)조서를 작성·보고한 사실이 있다.

[표] 부적정 집행 내역

연번	건 명	용역기간	용역금액 (천원)	지적사항
1	2023년 ○○○ 용역	'23.3.9.~ '23.11.30.	178,609	- 준공 시 집행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체 미확인(인건비, 산업안전보건비 등) * 안전관리비 항목은 붉은 글씨로 금액을 수기정정하고, 정당한 근거자료 및 증빙을 미첨부
2	2024년 ○○○ 용역	'24.4.22.~ '24.11.30.	28,520	- 준공 시 집행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미확인(인건비, 홍보비, 산업안전보건비 등) - 사업비 산출내역은 교육횟수(560회 이상)였으나 참여인원(7,472명)으로 정산하여 교육횟수 충족 여부 미확인 - 용역 수행 중 과업수행자 명단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에 운영기관에 미통보 및 미승인, 완수보고 시에도 숲해설 프로그램 강사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미확인
3	2024년 ○○○ 용역	'24.8.9.~ '24.12.31.	19,000	- 준공 시 정산내역서와 증빙서류 (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불일치 · ○○○ 10,130,000원 전자세금계산서만 존재 · 강사료 6,680,000원 집행하였으나, 1,740,600원 이체내역만 존재

연번	건 명	용역기간	용역금액 (천원)	지적사항
4	2023년 ○○○ 운영용역	‘23.6.21.~ ’23.10.27.	19,540	-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 24,000원*65회 = 1,560,000원 ○○○ 24,000원*85회 = 2,064,000원 ○○○ 24,000원*64회 = 1,536,000원 ○○○ 24,000원*35회 = 840,000원 ○○○ 24,000원*51회 = 1,224,000원 ○○○ 24,000원*31회 = 744,000원)
5	2024년 ○○○ 운영용역	‘24.5.1.~ ’24.12.31.	48,822	-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 15,000원*172회 = 2,580,000원 ○○○ 15,000원*86회 + 150,000원*3회 = 1,740,000원 ○○○ 15,000원*172회 = 2,580,000원 ○○○ 15,000원*172회 = 2,580,000원 ○○○ 15,000원*86회 + 80,000원*3회 = 1,530,000원 ○○○ 3,000원*688회 = 2,064,000원)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용역계약에 대한 완수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